

영등포구의회  
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 
기본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5. 16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17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고령화, 실업, 다문화 등 복잡·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행정과 함께 해결하는 ‘협치’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총칙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기본 원칙을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~안 제5조)

#### 나. 영등포구협치회의

- 영등포구협치회의 설치와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7조~안 제9조)
-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,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10조~안 제12조)
- 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~안 제14조)

#### 다. 민관협치 활성화 등

-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7조)
- 협치조정관, 지원조직, 민관협치 협약,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~안 제21조)
-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,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2조~안 제24조)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: 없음

※ 2016. 9. 29. 제6317로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」를 참고할 수 있음.

####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기 타: 입법예고(2017. 4 . 13 . ~ 5 . 4 .)결과,  
의견없음

## 라. 타구조례제정현황

- 조례 제정완료 서울시 자치구(4개): 도봉구, 금천구, 은평구,  
관악구
- 상반기 중 제정예정 자치구(5개): 영등포구, 서대문구, 동대문구,  
성동구, 강서구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행정과 함께 해결하는 ‘민·관협치’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·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기본원칙
  -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
  -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영등포구협치회의 설치와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
  -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,

##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

-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는 회의 개최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
  -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사항
  -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는 협치조정관, 지원조직, 민관협치 협약,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대한 사항
  - 안 제22조에서 안 제24조는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,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구 행정에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,
-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관 협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민·민, 민·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 지역협치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구민이 수평적, 능동적,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협치 행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

별 첨